

제19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계약기간

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, 등급변경 및 서비스 시간 변경 등에 따라 중도 재작성 할 수 있다.
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2. 계약목적

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으며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시설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- ①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.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(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함).
- 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"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"과 같다.
상기 당사자 (이하"갑", "을" 이라 한다)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 및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(1)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 - (2)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 - (3)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 - (4)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-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(1)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 - (2) 계약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 - (3)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
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
 - (4) 계약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 - (5)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는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간호(조무)사 1명, 운전 및 수발지원 1명에 의해 안전한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5. 계약의 해제 및 처리방법

① 계약의 해제

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.

- (1) 이용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

- (2)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- (3)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이용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
- (4)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
- (5)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

② 처리방법

- (1) 계약해제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제 의사를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- (2) 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, 택배 등 수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에게 송달 처리한다.

6. 개인물품

- ① 이용자는 기관 이용 시 기관이 지정한 개인 물품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.
- ② 기관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.

7. 외출

- ①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자가 보호자가 아닐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.
- ② 기관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입을 원할 때는 기관과 협의 후 반입한다.
- ③ 외출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외출 중에 발생한 이용자의 변화 및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.

8. 식사 및 간식

1일 2식 및 2간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며,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

9. 개인정보 보호의무

- ①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로 한다.
- ④ 이용자는 기관이 수집,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10. 기록 및 공개

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가족이 요구 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